

일하는 청년 위한 “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” … 부천·횡성·영동·고흥에 총 570호 선정

-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 통합 후 첫 공모 시행… '24년 4천호 공급 목표

□ 경기 부천, 강원 횡성, 충북 영동, 전남 고흥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(9.15.~11.30.)를 실시하고, 현장조사·제안발표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안한 2곳(영동, 고흥)과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가 제안한 2곳(부천, 횡성)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.

○ 이에 따라,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,452호(12곳)를 포함하여 총 3,022호*를 공급하게 된다.

* 최근 3년 평균(2,324호) 대비 약 30% 증가

○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지방재정 투자심사,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할 계획이다.

- 상반기에 선정된 전주·의령·경남 고성 등 3곳은 '24년 착공할 예정이다.

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·산업단지 근로자,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*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,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으로 '22년까지 3.4만호를 승인하였고 2.6만호가 준공되었다.

* (임대료)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%~90% 수준

(사업비)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%까지 지원(출자 39%, 융자 41%)

-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, '24년도에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관심있는 지자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광림 (044-201-4539)
		담당자	사무관	윤동영 (044-201-4513)
			주무관	김태근 (044-201-4542)



참고 1

2023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역

□ 경기 부천(LH)



- △ (위치) 경기 부천시(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-1BL)
- △ (사업시행자) LH
- △ (사업비/호수) 2,992억/일자리 300호(연면적 7,800㎡)
- △ (주요내용) 통합공임 1,002호(일자리연계형 300호), 지원시설(추후 지자체 협의)

□ 강원 횡성(LH)



- △ (위치)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4-2번지 일원
- △ (사업시행자) 한국토지주택공사 + 횡성군
- △ (사업비/호수) 236억/80호(연면적 5,574㎡)
- △ (주요내용) 통합공공임대 80호(일자리연계형 80호), 지원시설(없음)

□ 충북 영동



- △ (위치)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2-2번지 일원
- △ (사업시행자) 영동군(농촌신활력과)
- △ (사업비/규모) 94억/50호(연면적 3,110㎡)
- △ (주요내용) 통합공공임대주택 총 50호 (일자리 50호), 서비스연계형 (청년센터 시설 925㎡ 연계)

□ 전남 고흥



- △ (위치) 고흥군 고흥읍 성촌리 126-1번지
- △ (사업시행자) 고흥군(인구정책과)
- △ (사업비/호수) 351억/140호(연면적 8,595㎡)
- △ (주요내용) 통합공공임대 140호(일자리연계형 140호), 지원시설 500㎡(업무·창업 지원, 양육 지원 등 9개소)

참고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

- (개념)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기근로자 및 전략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비 경감,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공공주택

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념도 】



- (공급대상)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 종사자, 중소기업·산단기업 근무자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시설 등과 연계·공급

일자리계층 유형	판단기준	입주계층
① 창업지원형	근로형태 등	창업인(예비), 창업기업종사자
② 지역전략산업지원형	산업분야 등	해당지역 전략산업종사자
③ 산단·중기근로자형	산업단지, 기업형태, 규모 등	산업단지 기업 근로자
		중소기업 근로자

- (자격요건) ❶공급대상 중 청년·신혼부부·한부모가족 또는 장기근속자로서 ❷무주택, ❸주택유형별 소득·자산 기준 요건을 갖춘 자
- (임대료) 행복주택은 인근 시세의 72~80%,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~90%로 공급
- (입주자 선정) 지역 수요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재량권 부여